

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 제정고시

국가기술표준원 (2021. 08. 03)



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,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(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)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[가정용 미용기기]와 [감열지]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및 고시함.

❖ 안전기준 제정배경

- LED마스크,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,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
-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 (LED마스크, 두피관리기, 눈마사지기, 플라즈마 미용기기)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
 - ① (LED마스크, 두피관리기) 국제표준(IEC)에 따른 빛·레이저 안전성 등급
 - ② (눈마사지기)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
 - ③ (플라즈마 미용기기) 오존,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
- 감열지는 영수증,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,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함.
-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.02 %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,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임.

❖ 주요 내용

-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 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함.
-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·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, 감열지의 제조·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하여야 함.
- 금번 제정·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 시행 예정임.

♣ 상기 관련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.

